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설 정 서

2010.10.25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10. 7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0.10. 8.
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0.10.25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창기황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

가. 제안이유

지역일자리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의 입안·시행에 있어 구청장의 정책자문 및 협의 등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대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(안 제2조)

 가)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

 나)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, 취업알선, 교육훈련
 지원,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

- 다)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
 - 라)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- 2) 위원회의 구성·운영·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~ 제9조)
- 가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함
 - 나) 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함
 - 다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함
 - 라) 위원회의 심의·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(단체)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(협조요청)할 수 있도록 함
- 3) 위원의 해촉 및 수당, 그 밖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~제11조)
- 가) 자진사퇴, 임무수행 곤란 등의 사유발생 시 해촉하도록 함
 - 나)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함
 - 다)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

3. 겸임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및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·공공부문의 역량이 집결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
0 금년도 서울시 경제성장률이 약 3.9%로 예상되는 등 경제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민간부문의 고용은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, 공공 일자리 대폭 축소 및 희망근로사업의 상반기 종료에 따른 계절적·정책적 실업자의 고용 박탈감이 심각한 실정에 있음.

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호형 일자리 제공은 물론 양질의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포

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설치·운영은 시의 적절한 시책으로 판단됨.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양질의 안정적인 고용기회 확대로 일자리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, 안 제3조제1항 중 “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를 삭제하여 이를 안 제2조제4호에 규정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”는 입법체계상 “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“마포구의회 의원 1명”은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안 제4조의 제목 “운영”은 본문의 규정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“위원장의 직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외의 본문은 입법체계상 삭제하며, 제1호 “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”를 “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”로 조문 정리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”를 삭제하여 이를 안 제3조에 규정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”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

은 조 제5호는 안 제4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안 제5조 각 호외의 본문에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조문 정리하였음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안 제11조의 수당지급과 관련, 안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안 제11조 중 “수당”을 “수당과 여비”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0. 10. 25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구청장” 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함. (안 제2조제4호)
- 나.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, “위원중”을 “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”, “되며, 다음 각 호의”를 “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,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 함. (안 제3조제1항)
- 다. “1. 마포구의회 의원 1명”을 삭제하고,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함. (안 제3조제1항제1호~제4호)
- 라. “단, 위촉직 위원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”는 단서를 신설함. (안 제3조제3항)
- 마. 제목 “운영”을 “위원장의 직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호외의 본문을 삭제하며,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“5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

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” 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항을 “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”로 제2항을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와 서기를 둔다.”를 “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”로 함. (안 제4조)

- 바. “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”로 함. (안 제5조)
- 사. “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”로 함. (안 제11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4호 중 “구청장” 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
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 “이라 한다)”
을 “구청장” 으로, “위원중” 을 “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”
로, “되며, 다음 각 호의” 를 “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” 로,
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, “자로” 를 “사람으로” 각각 수정하며, 같은
항 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
지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에 “단, 위촉직 위원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
한다.” 는 단서를 신설한다.

안 제4조의 제목 “운영” 을 “위원장의 직무 등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각
호외의 본문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1항부터 제4
항까지로 하고, 제5호를 삭제한다. 같은 조 제1항을 “위원장은 위원회를
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” 로, 제2항을 “위원장이 부득이한
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”
로, 제3항 중 “간사와 서기를 둔다.” 를 “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”
로 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”

안 제10조 중 “중 이라도”를 “중이라도”로 한다.

안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되고,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, 주민생활국장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마포구의회 의원 1명 2. 직업훈련기관, 족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3. 학계·경제계·시민단체 등 고용관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<p>② (생략) ③ 위원 중 공무원, 단체·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원 변동 시 해촉하고, 후임자를 재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(원안과 같음) 1. ~ 3. (원안과 같음) 4. ----- 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-----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구청장 ----- -----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----- 호선하며, ----- ----- 되고, 위촉직 위 ----- 원은 다음 각 호의 ----- 사람 --- ----- 사람으로 -----.</p> <p>< 삭제 ></p> <p>1.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 3. ----- ----- 사람 ② (원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단, 위촉직 ----- 위원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----- 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④ (원안과 같음)</p>

원 안	수 정 안
<p><u>제4조(운영) 위원회 및 일자리창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</u></p> <p>1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2.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한다.</p> <p>3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</p> <p>4.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</p> <p>5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</p>	<p><u>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<삭제></u></p> <p>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.</p> <p>③ -----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삭제></u></p>
<p><u>제5조(회의)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되며,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한다.</u></p> <p>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</p> <p>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<u>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<u>제10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<u>제10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중이라도 -----.</u>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
<p><u>제11조(수당 등)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.</u></p>	<p><u>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</u></p>